

행정자치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소방차량 보험가입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훈계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소방서(전 ○○○소방서) 지방○○○ ○○○

② 부산광역시 ○○소방서 지방○○○ ○○○

③ 부산광역시 ○○소방서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4. 6.부터 2016. 7. 10.까지 ○○○소방서에서, 2016. 7. 11.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소방서에서, 지방○○○ ○○○는 2014. 7. 8.부터 2016. 1. 7.까지 ○○소방서에서, 지방○○○ ○○○은 2015. 4. 6.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소방서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소방차량 보험가입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표 1】 과 같이 관련업체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부산광역시 소방서 연도별 보험가입 현황

소방서	가입 연월일	계약금액(원)	도급업자	계약방법	비고
○○○	2015.9.30.	28,659,140	○○○○보험(36대)	수의계약	
○○	2015.10.6.	20,363,690	○○화재(38대)	수의계약	
○○	2015.10.1.	24,916,330	○○화재(35대)	수의계약	
○○	2016.9.29.	22,310,120	○○화재(39대)	수의계약	

※ 자료 : 부산광역시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려면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같은 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의 가격 등 입찰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정가격이 낮아 입찰이 유찰되어 예정가격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정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새롭게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의 보험 갱신계약 최초입찰 및 재공고 입찰이 유찰 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2】와 같이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가격 대비 34,403,020원의 예산을 과도하게 지급하였다.

【표 2】 부산광역시 소방서별 수의계약 부적정 현황

소방서	계약 체결일	가 격(원)			도급업자	계약방법
		차 액	예정가격	계약금액		
합 계		34,403,020	61,846,260	96,249,280	-	
○○○	2015.9.30.	14,606,750	14,052,390	28,659,140	○○○○보험(36대)	2회유찰 (수의계약)
○○	2015.10.6.	3,363,690	17,000,000	20,363,690	○○화재(38대)	2회유찰 (수의계약)
○○	2015.10.1.	12,916,330	12,000,000	24,916,330	○○화재(35대)	2회유찰 (수의계약)
○○	2016.9.29.	3,516,250	18,793,870	22,310,120	○○화재(39대)	2차입찰 (수의계약)

※ 자료 : 부산광역시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공고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